

감리지적사례 FSS/2112-11 :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 쟁점 분야: 미지급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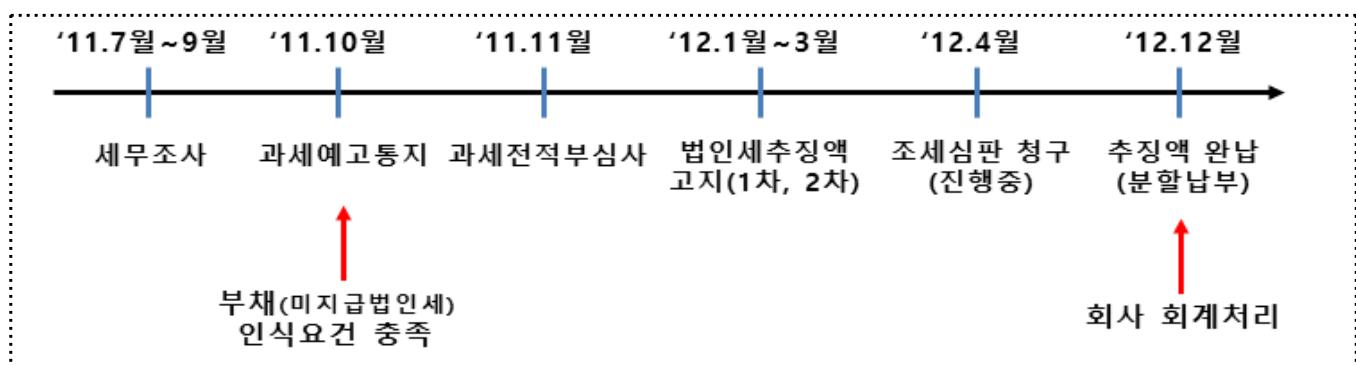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11.7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1.10월 과거에 과소납부한 법인세 52억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11.1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2.2월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내렸고 법인세추징액은 ’12.1월 1차 고지(8억원) 및 ’12.3월 2차 고지(나머지 44억원)되었다. 회사는 ’12.1월 1차 고지액을 납부하고 ’12.3월 2차 고지액 중 일부를, ’12.12월 나머지 2차 고지액을 모두 납부(모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12.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과세예고통지 이후부터 미지급법인세를 계속 계상하지 않다가 ’12년 결산시 재무제표에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1.10월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부채(미지급법인세)의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1년부터 ’12년 3분기까지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 추징 과정 및 회계처리 시점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12에 따르면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 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 문단4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로서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는 향후 과세 납부를 통한 자원의 유출가능성 및 금액에 대한 신뢰가능성 측면에서 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 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11년에 대한 기말감사 시, 회사가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감사인은 '11년 중 세무조사가 있었고 기말감사 현재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세무조사 결과 및 법인세 추징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과세 관련 소관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보수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과세납부고지 등 과세의무 및 금액이 확정되기 전, 즉 거래나 사건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 금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